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2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임종득·김형동·주호영

유용원 • 엄태영 • 김상훈

천하람 · 김예지 · 이종배

김석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는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스마트농업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수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570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유기식품등의 인증에 대한 특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중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아 법률 제19570호 스마트농업 육성 법률 제19570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유기식품등의 인증에 <신 설> 대한 특례)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으로 수 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중 유기식 품등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